

- 총 정원 증원 : 8명(7,324명 → 7,332명)
 - 급회 증원되는 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윤병국)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기 안정화와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확보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제안됨.
 - 이번 개정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2.12.2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8명의 한시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서울특별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총 정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이번에 증원되는 8명의 한시정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승인된 내용이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사항임.
 -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8명을 반영한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수는 현행 총 7,324명에서 7,332명으로 늘어남.
- ※ 이번에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존속기관은 2003.1.1~2004.12.31까지 2년간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7,324명”을 “7,332명”으로 하고, 같은조제2호중 “7,306명”을 “7,314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원 8명(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인력)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0
----------	-----

2003년 2월 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자 : 2003년 1월 29일
 - 다. 회부일자 : 2003년 1월 30일
 - 라. 상정일자 : 2003년 2월 17일
- (제1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제안설명자 : 건설안전본부장 최창식)

-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공사 시행을 민간용역업체에 공사시방서 이행 등 품질관리 업무만을 의뢰하고, 설계변경 및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는 부분검측감리 방식에서 감독업무의 일체를 시설관리공단 등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 하였으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상수도공사의 범위"를 신설하고, 감독업무 위탁대상 소규모공사의 범위에 "상수도공사"를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3. 검토의견(건설전문위원 안석수)

-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소규모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및 기성·준공 등의 제반 감독 업무는 관계공무원이 "각종 상수도 관련 공사가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주는 민간용역업체의 부분검측감리 업무 보조를 받아 직접 수행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관계공무원과 시공업체와의 유착 부조리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우려와 많은 문제점들이 감사기관 등을 통해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음.
- 서울시가 그러한 우려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소규모 상수도공사의 품질수준을 크게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 외부전문기관 및 단체에 상수도 관련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위탁관리하기 위해 제안한 본 조례개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설안전본부 소관 소규모 공사감독 업무 위탁사례 등과 연계하여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의 각종 소규모공사에 대한 감독업무의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집중 위탁됨에 따라 공단 업무의 과중 및 효율성 저하 등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상수도공사 감독업무의 외부기관 위탁과 연계하여 기존의 감독공무원에 대한 인력진단과 감축 조정 등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상수도공사"라 함은 수도법 제3조에서 정한 수도시설을 신설·보수·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 포장복구공사 등의 부대공사를 포함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상수도 공사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이 조례는 시행 후에 계약하는 상수도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